

SHIN&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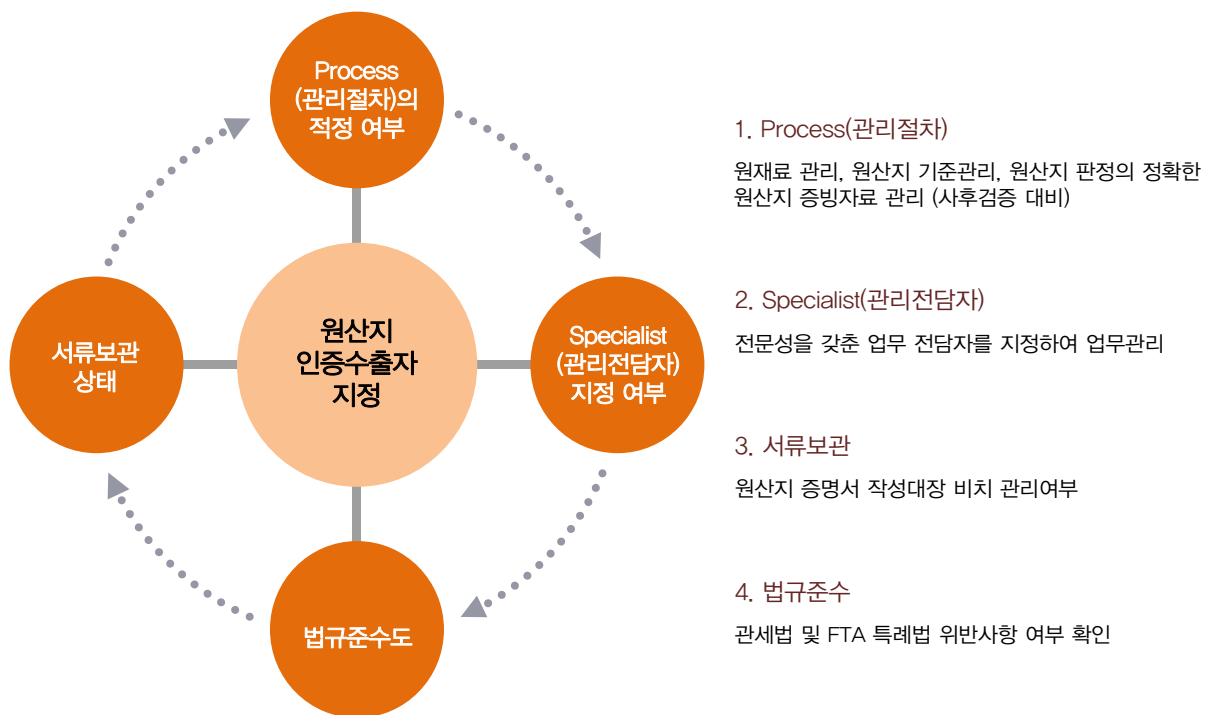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대행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 예정. 협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 지정심사 기준



■ 구비서류

-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인증 신청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 지정혜택

-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야만 FTA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생략
-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생략(전산시스템 이용 용이)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은 관세청 및 세관의 원산지 분야에 다년간 근문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최상의 전문가로서 FTA 업체별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협정별, 수출물품별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고, 사후검증을 대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 FTA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시간과 비용의 절감

Rule Engine에 의한 원산지 판정이 즉시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시간과 원산지 관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업무부담의 감소

기업 내부 회계시스템(ERP 등)과 연계하여 원산지판정부터 증명서류 발급까지 가능하며, 관련 근거 서류 등이 시스템에 보관되므로 FTA 관련한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오류에 따른 RISK 감소

서류 작업시 수기의 경우보다 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하게 원산지를 판정하며,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함으로써 원산지관리오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1. 원산지 인증수출자 기반시스템
2. 세관검증 대응 및 허위신고 예방 시스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가능 ⇒ 업체의 이익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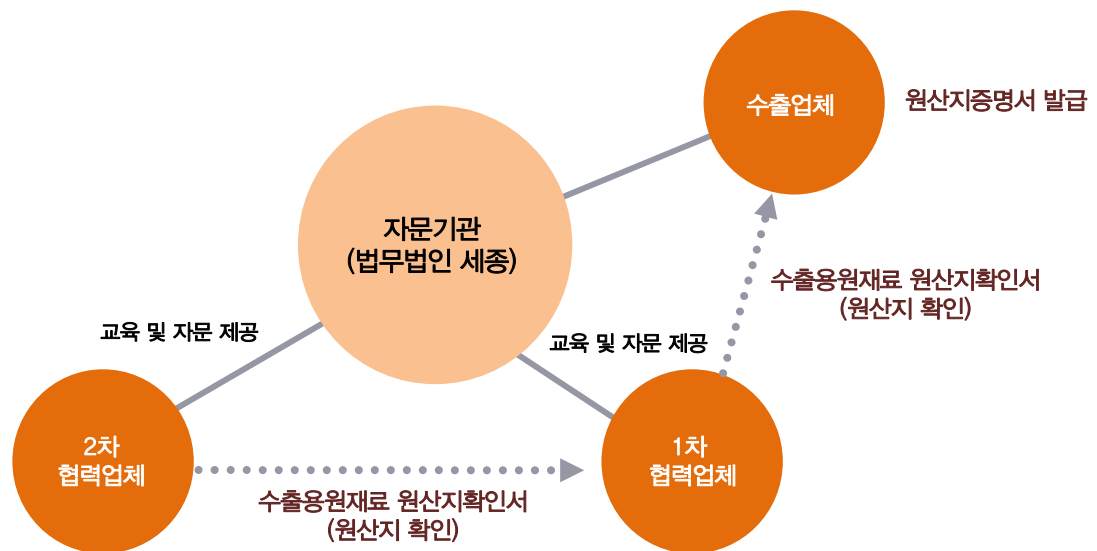
■ FTA 관리시스템 구축도



2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의 검증

대부분의 협력업체(공급자)는 수출입 경험이 부족하므로 HS 분류 및 원산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원산지 검증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품목분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관세분야에 있어 30년간 관세청 및 세관에서 근무한 관세전문가와 세종의 회계전문가 및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와의 Consortium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사후검증 대리

한-미, 한-EU FTA 발효 시 연간 1천 5백 여건 이상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예상됨.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은 초기단계로서 극히 취약한 상태이므로,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 원산지 사후검증 시 Check Point

업체 일반정보	- 대표자/주소/업종/조직도/담당자/사업자등록번호/공장위치 - 종업원수/최근 3년간 매출액/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수출품목(연간금액)/수입품목(연간금액) - 주요 국내외 거래선/회계감사업체
생산 정보	- 생산시설/생산장비/생산능력 - 생산품목별 원자재리스트(BOM) - 생산품목별 제조원가내역서 - 생산품목별 생산공정설명서
회계 정보	- 총매출액 중 재료비/인건비/제조경비/이윤(세전)의 비중 - 재고품평가방법: 개별법, FIFO, LIFO, 평균법, 기타 -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정액체감법, 정률체감법, 기타 - 생산장비 내구연수기준표 - 제조원가 산정방법
원산지 결정 정보	- 생산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업체의 원산지결정방법 및 논리 - 생산품목별 투입 원재료, 그 소요량 및 취득가격 - 생산품목별 원재료 공급자 리스트 - 누적기준 적용 시 해당 재료에 대한 C/O구비여부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은 원산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EU 집행위원회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후검증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FTA 원산지 관련 자문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가 체결됨에 따라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은 업체에 가장 적합한 FTA 활용 Business Model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통상 전문 변호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업체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ontact Point

• 이 대 영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 10회 행정고시 합격
- 관세청 및 세관근무 30년 (1971~2001년)
- 관세청 관세평가협력국장 (2회)
- 주미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관세주재관
- 대구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 관세청 차장
- 새빛회계법인 고문, 관세사
- 법무법인 세종 고문, 관세사

Office : 02-316-4348 / Cell : 010-3894-2640 / Fax : 02-316-1599 / E-mail : dylee@shinkim.com

• 이 재 혁 관세사

Office: 02-316-4487 / Cell : 010-5415-7031 / Fax : 02-316-1599 / E-mail : jhyuklee@shinkim.com

• 이 승 열 관세사

Office: 02-316-4372 / Cell : 010-9963-1107 / Fax : 02-316-1599 / E-mail : syelee@shinkim.com